

방송통신위원회 한시임기제 9호(시간선택제 행정9급) 채용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9호(시간선택제 행정9급)를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일반행정	한시임기제 9호 (시간선택제 행정9급)	1명	임용일로부터 '23.2.28.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정부과천청사)

※ 근무시간 : 주 20시간 근무(수 : 14시~18시 / 목·금 : 09시~18시)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업 무
일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 접수 및 분류○ 민원상담 등 민원처리 업무○ 기타 민원실 소관업무 지원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행위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 직급	응시 자격요건	
한시임기제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서 민원업무 처리 등 관련분야 경력

□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경력기간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자격증	사무관리분야 및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경력'요건의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2021.9.6.)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등
 -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 명기 제출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미기재 및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우대요건 】

- **(경력)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 경력증명서에 의해 직무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자격증) 사무관리분야 및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복수 소지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우대요건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2개 항목 이상에서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 어느 하나의 항목에서 위원 2분의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보수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2021년 한시임기제 9호 봉급액(주40시간 기준) : 1,684,800원
-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보험가입)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1.10.19.(화) 예정
 -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1.10.26.(화) 실시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1.11.12.(금) 17:00 예정
 -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1.9.28.(화) ~ '21.10.8.(금)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접수처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1305 / 팩스 : 02-2110-0152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실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

9. 제출서류

- 총 9개 항목으로 관련 내용 확인 후 제출 요망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5,000원) 필요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내용(경력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2매 내·외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용지 5매이내(본문)로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 순으로 함 - 본문(5매 이내)은 글씨크기 15pt, 줄간격 150mm, 용지 좌우 여백 각각 20mm, 상하 여백 및 머리말·꼬리말 각각 12mm 	필수

구 분	내 용	비 고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상근 유무, 담당업무 등 기재 ○ 재직한 기관(회사)이 폐업 등으로 증명서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해외 경력인 경우 증명서는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필수
6.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1부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해당자 제출
7.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 	필수
8.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서류의 검증에 대한 동의서 (서명필수) 1부 	필수
9.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서명필수) 1부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는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함께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은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chan89@korea.kr)로도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10. 기타 유의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chan89@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11. 12. ~ '21. 12. 10.)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에게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서류 전형 합격자가 확진자 또는 격리자 또는 능동감시자인 경우 면접 전형일 전에 반드시 관련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면접 전형일 기준으로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10-1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별지 제1호>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분야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민원실)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접수 및 분류 ○ 민원상담 등 민원처리 업무 ○ 기타 민원실 소관업무 지원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관련 법률 지식 ○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등) 능력
-------------	--

응시자격요건	경력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분야경력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서 민원업무 처리 등 관련 분야 경력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사무관리분야 및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별지 제2호>

응시자 제출서류

성 명	임용예정기관	직급	응시요건
	방송통신위원회	한시임기제 9호	근무경력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원서(필수)	
2. 이력서(필수)	
3. 자기소개서(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필수)	
5. 경력(재직)증명서(필수)	
6.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 증빙(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초본(필수(남자에 한해 제출))	
8. 자격요건 검증동의서(필수)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필수)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0" 표시

<별지 제3호>

응시원서

본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O / X
응시요건	6개월 이상 근무경력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자격 (※ 관련분야 실적만 인정)

○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우대요건 관련 (※ 관련분야 실적만 인정)

○ 경력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격증

①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②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글씨크기 등은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여러 장으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응시 분야	한시임기제 9호	성명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성자 ○ ○ ○ (서명)

<서명 필수>

직무수행계획서

응시 번호		응시 분야	한시임기제 9호	성명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 .

작성자 ○ ○ ○ (서명)

<서명 필수>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